

의안 번호	제2335호 ~ 제2336호
----------	-----------------

2022.12.27.(화) 10:00
제347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

검 토 보 고 서

안건 : 2건(개정조례안1, 개정규칙안1)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안광수

목 차

- 장성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 장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335호
- 제출일자 : 2022. 12. 13.
- 제출자 : 장성군의회의회장(나철원 의원)
- 회부일자 : 2022. 12. 14.

2. 제안이유

- 장성군의회 의원발의 조례 등의 제·개정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한 자문과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고문변호사 정원을 조정하여 다양한 법령 해석을 통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고문변호사 위촉 정원 조정(안 제2조)
 - 고문변호사 위촉 정원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2명으로 조정함.
- 직무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3조)
 - 자치법규 제·개정 등 입법관련 자문
 -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등 그밖에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의 자문 등
- 자문처리 실적부 비치(안 제6조 신설)
 - 자문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처리 실적부를 비치하여 정리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장성군의회 의원발의 조례 등의 제·개정 및 법률적 사안에 대한 자문과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고문변호사 정원을 조정하여 다양한 법령 해석을 통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 됨.

6. 첨부서류 : 생략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336호
- 제출일자 : 2022. 12. 13.
- 제출자 : 장성군의회의회장(김연수 의원)
- 회부일자 : 2022. 12. 14.

2.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실적가산점 제도 운영을 위하여 실적가산점 부여기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개정(안 제6조)
 - 7급 이상 응시연령을 8급이하와 동일하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정비(별표 4)
 - 전산직렬을 필수자격증 요건이 적용되는 특수직급에서 제외
 - 기타직렬 응시요건 기준 일원화 *4개 직렬(8개 직류) 해당
-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에 전산직렬 자격증 추가
(별표 5의2)

- 타 직류와 형평성을 고려해 8·9급 시험 가산점 대상이 되는 기능사 자격증 및 ‘20년 신설된 빅데이터 분석기사를 추가
-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중 전산직렬을 신설(별표 7의3)
 - 특수직급 응시자격증(별표 7의3)에서 전산직렬을 삭제함에 따라 가산대상 자격증에서 전산직렬란을 신설

4. 법적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5. 검토의견

-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실적가산점 제도 운영을 위하여 실적가산점 부여기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 됨.

6. 첨부서류 : 생략

의 안	제2337호 ~ 제2339호
번호	제2342호~제2343호

2022. 12. 27.(화) 10:30
제347회 임시회 제1차 행자위

검 토 보 고 서

안건 : 5건(제정안 2, 개정안 3)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백 윤 석

목 차

□ 장성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 장성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5
□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 장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 장성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1 장성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337호
- 제출일자 : 2022. 12. 13.
- 제출자 : 최미화 의원(문화관광과)
- 회부일자 : 2022. 12. 14.

2. 제안이유

- 장성군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향교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육성지원사업 대상 (안 제3조)

- 문화예술교육 사업 : 강학, 인성, 예절, 의례 교육
- 문화행사 사업 :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 한시·한문 등의 공연
- 전통의례 사업 : 석전제, 관내 서원·사우 제례행사, 기로연·향음주례, 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전통 혼례, 성년례 등의 관·혼·상·제 관련 의례
- 인력양성 사업 : 강학, 전통문화예술, 전통예절 교사 양성

○ 사업 수행 장소 (안 제4조)

- 향교 지원사업에 관한 사업

○ 지원신청 및 적정성 판단 지원결정(안 제5조 ~ 안 제6조)

- 사업비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통지에 관한 사항

○ 교부 결정의 취소 및 실적보고·지도감독(안 제8조 ~ 안 제10조)

- 사업비의 교부 결정 취소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 「지역문화진흥법」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장성군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향교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2 장성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338호
- 제출일자 : 2022. 12. 13.
- 제출자 : 서춘경 의원(환경과)
- 회부일자 : 2022. 12. 14.

2. 제안이유

-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순환 가능한 영농폐기물 처리하고 친환경농업을 도모하는 등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처리, 예산지원 등, 수거위탁, 수거의 날 지정 사항(안 제5조 ~ 제9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법적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10조)
- 「자원순환기본법」(제12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 순환 가능한 영농폐기물 처리, 친환경 농업 도모 등 농업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339호
- 제출일자 : 2022. 12. 13.
- 제출자 : 김연수 의원(민원봉사과)
- 회부일자 : 2022. 12. 14.

2. 제안이유

- 농지법 시행에 따른 가설건축물 설치 시 나타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설건축물 높이를 3미터에서 4미터로 완화.
(안 제26조제2항제4호)

4. 법적근거

-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제3호)

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농지법 시행에 따라 가설건축물 설치 시 나타나는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가설 건축물 규정을 완화하여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342호
- 제출일자 : 2022. 12. 13.
- 제출자 : 장성군수(총무과장)
- 회부일자 : 2022. 12. 14.

2. 제안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변경(안 제2조제3항)
 - (현행)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
 - (개정)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
- 심의회 구성 변경(안 제10조제1항)
 - (현행) 7인이내 → (개정) 5명이상 7명이하
 - (현행) 군수가 위원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
 - (개정) 부군수
- 심의회 위원위촉 구성 변경(안 제10조제2항)
 - (현행) 위원은 군수가 정보공개 업무에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 (개정) 당연직 위원은 업무 관련 부서장, 위원의 3분의 2는 행정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초과 금지
- 당연직 위원 구성 변경(안 제10조제3항) - 삭제

4. 법적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343호
- 제출일자 : 2022. 12. 13.
- 제출자 : 장성군수(세무회계과장)
- 회부일자 : 2022. 12. 14.

2. 제안이유

-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과 겸임금지 및 결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검사위원의 기밀엄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결산검사위원의 일비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동일액으로 지급되고 있어 인근 지자체 수준으로 인상이 필요함.

3. 주요내용

-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조문 정비(안 제3조)
 - 선임 방법과 관련하여 위원 중 1인은 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삭제 및 지방자치법 규정을 제64조에서 제73조로 조문 정비 (지방자치법 2018. 12. 24. 개정)
- 결산검사위원의 겸임금지 규정 신설 및 결격의 범위 확대(안 제5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은 장성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는 결산검사위원의 겸임금지 규정 마련
 - (현행)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군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개정)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군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관계 법령 개정 관련 용어 정비(안 제6조, 제11조, 제12조)

- (현행)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

(개정)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현행)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 (현행)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

(개정)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

○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7조)

- (기존) 1. 세입·세출결산

→ (개정) 1. 결산개요

2. 계속비, 명사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2. 세입·세출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3. 재무제표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4. 성과보고서

5. 금고의 결산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 결산검사위원 일비 지급기준 상향(안 제13조 별표2)

- 결산검사 위원 일비를 현행 120,000원에서 130,000원으로 상향 조정

○ 결산검사위원의 기밀엄수 규정 마련(안 제14조)

- 검사위원은 위촉기간 및 해촉 이후에도 결산검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4.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제150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221호)

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과 겸임금지 및 결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검사위원의 기밀엄수에 대한 규정 마련, 일비 지급기준 향상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으나
- 안 제14조 기밀엄수의 규정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에 있어 제약사항으로 판단되며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6. 첨부서류 : 생략

의안 번호	제2344호~ 제2345호
----------	-------------------

2022. 12. 27.(화) 11:00 제347회 임시회 제1차 산건위

검 토 보 고 서

- 안건 : 2건(제정조례안 1, 승인안1)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안광수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344호
- 제출자 : 장성군의회의회장(서춘경 의원)
- 제출일자 : 2022. 12. 13.
- 회부일자 : 2022. 12. 14.

2. 제안이유

- 최근 식생활의 변화로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국내 생산량 및 해외 수입량 증가에 따른 쌀값 하락으로 쌀 생산 농가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어,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고품질 쌀 소비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고품질 쌀 생산·유통체계, 소비촉진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안 제3조)
- 고품질 쌀 소비촉진 활동 등 쌀 종합대책 마련과 효과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장성군 쌀 종합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안 제4조 ~ 제12조)

- 고품질 쌀 생산자와 유통업자 등에 대한 지원사항 규정(안 제13조)
- 쌀 소비촉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 규정(안 제14조)
-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안 제15조 ~ 제16조)

4. 관계법령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쌀 소비량 감소 및 쌀값 하락으로 쌀 생산 농가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어 고품질 쌀 생산 환경 조성과 고품질 쌀 소비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2345호
- 제출자 : 장성군수(건설과장)
- 제출일자 : 2022. 12. 13.
- 회부일자 : 2022. 12. 14.

2. 제안이유

- 진원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소재지를 서비스기능 확충으로 배후 마을에 대한 거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생활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2021년도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아 2025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전문 기술인력 투입 및 네트워크 활용으로 양질의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도 위탁 시행함에 따라 계속비 사업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계속사업비 : 당초 4,000백만원(국비 2,800, 군비 1,200)
변경 864백만원(국비 605, 군비 259)
- 계속비기간 : 당초 2021 ~ 2025(5년) / 변경 2021 ~ 2022(2년)

기간	사업비 (백만원)	내용
계	864	
2021년	543	• 기본계획 용역, 공기관 위탁사업비
2022년	321	• 기본계획 용역, 보상비, 공기관 위탁사업비

4.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

5. 검토의견

- 본 변경 승인안은, 진원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통해 배후마을에 대한 거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생활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2021년도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아 2025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 전문 기술인력 투입 및 네트워크 활용으로 양질의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로 위탁 시행함에 따라 계속비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

의 안 제 2340	2340
---------------------	------

2022. 12. 22.(목) 10:00
제347회 임시회 제2차예결위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백 윤 석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I. 제안경위

- 제출일자 : 2022. 12. 15.
- 제출자 : 장 성 군 수
- 회부일자 : 2022. 12. 21.

II. 추경안 편성개요

1. 추경안 편성개요

-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 제3회 추경 이후 발생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세 등 여건 변동으로 인한 증감사항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음.

2.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016억 2천5백만원으로 기정액 5,882억 3천 8백만원 보다 133억 8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그 중 일반회계는 5,901억 8천 8백만원으로 136억 1천 6백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14억 3천 7백만원으로 2억 2천 9백만원이 감액되었음.

그 내역은<표 1>과 같음

〈표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4회 추경 (정리추경)	기정액	증 감		비고
			증감액	증감률	
합 계	601,625	588,238	13,387	2.28%	
일반회계	590,188	576,572	13,616	2.36%	
특별회계	11,437	11,666	△229	△1.96%	

(참고) 2022년 예산 편성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4회추경	3회추경	2회추경	1회추경	본예산	비고
편성규모	601,625	588,238	571,909	522,238	488,106	
증가율	2.3%	2.9%	9.5%	7.0%		

Ⅲ. 세입예산

① 일반회계

-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5,765억 7천 2백만원 보다 2.36%인 136억 1천 6백만원이 증액된 5,901억 8천 8백만원임.
- 세입은 지방교부세 74억 8천만원, 조정교부금 등 50억 8천만원, 보조금 11억 5천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1억 2천 9백만원이 증액 되었고, 지방세 10억 3천 2백만원, 세외수입 1억 9천 1백만원이 감액되었음. 그 내역은 〈표 2〉와 같음.

〈표 2〉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세입예산)

(단위: 백만원)

세입과목	4회 추경 (정리추경)	기정액	증감액 (A)	비 고
합 계	601,625	588,237	13,387	
지 방 세	42,676	43,708	△1,032	
세 외 수 입	22,347	22,503	△156	
지 방 교 부 세	296,704	289,223	7,481	
조 정 교 부 금 등	14,080	8,976	5,103	
보 조 금	184,506	183,356	1,15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1,312	40,471	841	

2 특별회계

○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16억 6천 6백만원 보다 1.96%인 2억 2천 9백만원이 감액된 114억 3천 7백만원으로 세입 예산안은 <표 3>과 같음

〈표 3〉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항 목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기정예산 대비		비 고
			증감액	비율(%)	
계	11,437	11,666	△229	1.96	
세 외 수 입	3,825	3,790	36	1.33	
조정교부금 등	23	0	23	순증	
보 조 금	176	176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412	7,700	△288	△0.14	

IV. 세출예산

□ 분야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4회추경		기정액		비교증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601,625	100	588,238	100	13,387	2.28
일 반 공 공 행 정	43,528	7.24	28,537	4.85	14,991	52.53
공공질서및안전	49,419	8.21	49,252	8.37	167	0.34
교 육	4,237	0.70	4,236	0.72	0.6	0.02
문 화 및 관 광	37,012	6.15	36,767	6.25	245	0.67
환 경	44,236	7.35	44,275	7.53	△39	△0.09
사 회 복 지	112,012	18.62	113,208	19.25	△1,196	△1.06
보 건	10,779	1.79	11,532	1.96	△753	△6.53
농림해양수산	112,767	18.74	110,119	18.72	2,649	2.4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6,913	2.81	16,661	2.83	252	1.51
교 통 및 물 류	32,436	5.39	31,932	5.43	504	1.58
국토및지역개발	70,110	11.65	70,422	11.97	△312	△0.44
예 비 비	4,090	0.68	4,090	0.70	0	0.00
기 타	64,086	10.65	67,207	11.43	△3,121	△4.64

□ 부서별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4회추경		기정액		비교증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계	601,625	100	588,238	100	13,387	2.28
기획실	23,371	3.88	6,779	1.15	16,592	244.77
일자리경제실	15,122	2.51	14,976	2.55	146	0.97
자치소계	225,493	37.48	230,890	39.25	△5,397	△2.34
행정국 총무과	64,403	10.7	68,127	11.58	△3,724	△5.47
민원봉사과	3,564	0.59	3,721	0.63	△157	△4.22
문화관광과	22,769	3.78	22,524	3.83	245	1.09
주민복지과	33,539	5.57	34,009	5.78	△470	△1.38
가족행복과	79,823	13.27	80,545	13.69	△722	△0.90
환경과	16,173	2.69	16,218	2.76	△45	△0.28
세무회계과	5,222	0.87	5,746	0.98	△524	△9.11
건설소계	255,369	42.45	252,132	42.86	3,237	1.28
산업국 재난안전과	63,622	10.58	63,768	10.84	△146	△0.23
건설과	64,493	10.72	63,024	10.71	1,469	2.33
도시재생과	12,033	2	12,684	2.16	△651	△5.14
산림편백과	24,067	4	24,034	4.09	33	0.14
교통에너지과	21,985	3.65	21,980	3.74	5	0.02
농업축산과	50,365	8.37	48,324	8.21	2,041	4.22
농업유통과	18,804	3.13	18,318	3.11	486	2.65
보건소 소계	12,031	2	12,823	2.18	△792	△6.18
보건정책과	6,558	1.09	7,015	1.19	△457	△6.52
건강증진과	5,473	0.91	5,808	0.99	△335	△5.77
농업기소계	11,625	1.94	11,781	2.01	△156	△1.32
농업지원과	6,299	1.05	6,335	1.08	△36	△0.58
농업기술과	5,326	0.89	5,446	0.93	△120	△2.19
체육사업소	4,020	0.67	4,015	0.68	5	0.12
맑은물관리사업소	43,141	7.17	43,386	7.38	△245	△0.56
평생교육센터	5,069	0.84	5,073	0.86	△4	△0.07
의회사무과	883	0.15	884	0.15	△1	△0.03
읍면	5,501	0.91	5,499	0.93	2	0.03

□ 부서별 주요사업

(단위: 백만원)

부서명	구분	주요사업	요구액	비고
합계			17,871	
기획실	(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 2023년 추경재원으로 활용	17,000	
총무과	(자체)	인력운영비	△3,074	
세무회계과	(자체)	의회청사 신축	△494	
	(자체)	군 청사 공기 정화 살균기 구입	5	
재난안전과	(보조)	한파대책 방한용품 구입(예산성립전)	15	
	(보조)	부흥2교 소교량 재가설사업(특별교부세) - 가족센터 건립 특별교부세 2,000백만원은 재원변경하여 사용	500	
건설과	(보조)	삼서~광주 경계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도지사 재정지원금)	500	
	(보조)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학전지구, 성산지구) - 도비 50%, 군비 50%	300	
	(보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13건)	620	
농업축산과	(보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 국비 50%, 도비 12%, 군비 28%, 자부담 10%	1,724	
	(보조)	AI 차단 방역약품 구입(예산성립전)	30	
농업유통과	(자체)	쌀 생산농가 출하장려금 지원 -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출하장려금 1포(40kg)당 2,000원 지원	460	
	(보조)	농식품바우처 지원(예산성립전)	15	
농촌지원과	(보조)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 국비 45%, 군비 45%, 자부담 10%	270	

V. 검토의견

-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 이후 발생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세 등 여건 변동으로 인한 증감사항을 정리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016억 2천 5백만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5,882억 3천 8백만원 보다 133억 8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그 중 일반회계는 5,901억 8천 8백만원으로 136억 1천 6백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14억 3천 6백만원으로 2억 2천 9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 170억원, 부흥2교 소교량 재가설 사업 5억원, 삼서~광주 경계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5억원,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3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7억원, 쌀 생산농가 출하장려금 지원 4.6억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2.7억원 등이 편성되었음.
- 금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자체사업 및 국도비사업에 대해서는 연도 말까지 원인행위 등 절차를 완료해야 하겠으며, 이월사업을 줄이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힘써야 하겠음.

의 안 번호	2341
--------------	------

2022. 12. 22.(목) 10:00
제347회 임시회 제2차예결위

2022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백 윤 석

1. 제안경위

- 제출일자 : 2022. 12. 15.
- 제출자 : 장성군수(기획실장)
- 회부일자 : 2022. 12. 21.

2. 제안이유

- 「지방기금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의거 2022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장성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변경사유 : 2022년도 회계연도 내 여유자금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예치하여 재원의 효율적 활용
- 재 원 :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받은 예탁금, 이자수입, 수익금 등
- 용 도 : 재원이 부족한 다른 회계 및 기금 충원

(단위:천원)

구 분	항 목	경정	기정	증감	비고
수 입	계	30,589,715	1,538,557	29,051,158	
	예수금회수	13,083,071	1,383,071	11,700,000	
	예치금수입	17,424,639	152,450	17,272,189	
	이자수입	82,005	3,036	78,969	
지 출	계	30,589,715	1,538,557	29,051,158	
	일반예치금	30,589,715	1,538,557	29,051,158	

□ 자금수지 총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 계	30,589,715	10,195,005	20,394,710	합 계	30,589,715	10,195,005	20,394,710
전입금				비용자성사업비			
보조금				용자성사업비			
차입금				인력운영비			
용자금회수 (이자포함)				기본경비			
예탁금 원금회수				예탁금			
예치금회수	13,083,071	8,800,000	4,283,071	예치금	30,589,715	1,383,071	29,206,644
예수금	17,424,639	1,383,071	16,041,568	차입금원리금상환			
이자수입	82,005	11,934	70,071	예수금원리금상환	-	8,811,934	-8,811,934
타수입				기타지출			

4. 법적(제정)근거

- 지방재정법 제9조, 지방기금법 제16조
- 장성군 통합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5. 검토의견

- 본 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은 「지방기금법」 제 11조(기금운용 계획의 변경)에 의거 2022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장성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각종 사업 정산과 예비비 등 잔여재원 등 총 306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하여 향후, 예상하지 못한 재정 소요에 대비하고 추경예산 편성 등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써

-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

6. 첨부서류 : 생략